

April 14,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30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4. 6. ~ 4. 10.)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감원] 금융IT 감독·검사 방향 발표

2020. 4.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IT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CEO, CISO 및 이사회의 보안에 대한 책임성 부과, ②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실태 점검, ③ IT외부주문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부주문 관리실태 점검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금융IT 감독검사 방향](#)



[산자부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2020. 4. 6.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20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지자체 조성계획(안)에 대한 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②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추진, ③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부 R&D 참여시 가점, 지역투자 보조금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 적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산자부2]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2020. 4. 7.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고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 및 부산항 신항 서측, 남측 컨테이너터미널·인근 배후단지 283만㎡에 대한 확대 지정, ②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③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료 감면(미화 500만불 이상: 3년간 50%, 미화 1,000만불 이상: 5년간 50%) 등이 있음

[\[참고자료\]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산자부 등]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2020. 4. 8.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미·중·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28.7 조원), ② 유희 여객기 활용 화물 노선 증편, 수출중소기업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항공운임 관세특례 확대, ③ 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등 활용 증설투자 유턴, 수요기업 연계형 유턴 중점 유치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참고자료\] 붙임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

2020. 4. 8.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감독상 면책대상으로 지정, ②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③ 현지조치 대상확대 및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해 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



[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0. 4. 9. 그 동안 사안별로 결정하였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기한: 4. 29.) 주요 내용으로 ①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고발조치, ②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 가능, ③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나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 가능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과기부]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2020. 4. 9.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20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유지('19년 23%)하기 위해 장비·부품 국산화, 인프라 구축 추진, ② 국내 5G 연관 정보보안 생산액 679억원('19년 218억원 대비 211.5% 증가)을 달성하기 위해 선도기술 개발과 함께 인력 양성 및 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 추진, ③ '20년 5G 스마트공장 200개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 선도 추진, ④ 차량-클라우드-인프라 융합 자율주행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중기부]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방안 발표

2020. 4. 8.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원 증액(기존 1.6조원 → 2.1조원으로 확대), ②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공급, ③ 유니콘 도약이 가능한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에게 특례 보증(최대 100억원) 및 대규모 투자유치 기회 제공(~'22년, 100개 기업) 등이 있음

[참고자료]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방안



*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추가)

분야	내용
유통·관광·항공	- 유통·전시업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 - 외식·관광·주유소 등 민간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년도 적용료 25% 감면 -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을 항공사 정류료 수준(100%)으로 확대(20→100%) 등
스포츠 산업	- 특별융자 300억원 추가지원(200→500억원, 체육기금 변경) -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 상환일이 1년 내 도래 시('20.4.1. 기준)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1년) 제공(851건, 145억원) - 컨설팅, 상품 기획, 마케팅 등 영세 스포츠업체의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를 종합 지원(8,000만원x15개사, 체육기금변경) 등
농수산	-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오리)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화사업자 비축자금 융자 확대(100→200억원, +100억원) -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인천항만공사 소유) 임대료 감면(업체 입점 후 6개월 간 20%)으로 물류센터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유도 - 공공부문 중심 '우리 수산물 상생구매 캠페인(4월)'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 수산물 구매실적 반영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관보 제17193호\)\]](#)

최근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의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적합성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과 관련이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합성평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성적서 위변조 금지 의무,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과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21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대금지급, 불이익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34호\)\]](#)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43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44호)]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초기 판로 확보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민수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바,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30606호)]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사유에서 제외하고, 면제사유 중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 합의기한을 하도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 02-316-1777

✉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